

2024년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 [적용요령]**



행 정 안 전 부
지 방 세 제 국

목 차

I 2023년 지방세 지출 재설계 현황

1. 지방세 지출 개관	1
2. 지방세 지출 기본 원칙	2
3. 지방세 지출 재설계 현황	3
4.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특례 신설 · 확대	22

II 지방세특례제한법령 개정 내용

1. 지역 현안대응력 강화를 위한 조례감면 자율성 확대 [법 §4 등]	27
2. 자경농민, 귀농인 사후관리 규정 보완 [법 §6①④]	35
3.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요건 신설 [법 §12① 등]	41
4. 농협경제지주주식회사 감면 신설 [법 §14의3]	45
5. 위탁 직장어린이집 사후관리 규정 보완 [법 §19③]	49
6. 감면요건 “직접 사용” 의무규정 통일 [법 §19의2 · §20 · §44의2] ...	53
7.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및 연장 [법 §29②④]	57
8. 출산·양육 주택에 대한 취득세 특례 신설 [법 §36의5, §177의2 등] ..	63
9.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 의료기관 감면 확대 (§38④)	71
10.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 특례 신설 [법 §41⑧ 등] ..	73

11. 기초과학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등 재설계 [법 §45의2 · §52의2]	· 79
1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특례 신설 [법 §47의5]	··· 89
13. 법인 적격분할의 감면제외 대상 명확화 [법 §57의2③]	····· 91
14. 캠프의 중소기업구조개선 지원사업 감면 연장 등 [법 §57의3③~⑤]	·· 95
15.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및 재설계 [법 §58①~③, §78⑨]	·· 99
1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외대상 명확화 [법 §58의3⑥ 등]	· 105
17.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감면 재설계 [법 §60③]	····· 109
18. 재산세 특례체계 정합성 제고 [법 §60③ · §83①]	····· 113
19. 친환경선박에 대한 취득세 특례 신설 [법 §64④]	····· 117
20.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 취득세 추정요건 완화 [법 §68②④]	···· 119
21. 도시첨단물류단지 취득세 특례 신설 [법 §71의2]	····· 123
22.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감면 사후관리 규정 보완 [법 §75의4]	·· 127
23.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 신설 [법 §79의2]	····· 131
24.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방세 특례 신설 [법 §80의2]	····· 135
25. 소멸·멸실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규정 일원화 [법 §92③]	·· 143
26. 재난 신속대응 지방세 감면지원 체계 구축 [법 §92④⑤]	····· 145
27.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중복 특례 명확화 [법 §180]	····· 151
28. 이자상당가산액 이자율 인하 [영 §123의2①]	····· 153

III 참 고 자 료

2024년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	····· 157
-------------------	-----------

I. 2023년 지방세 지출 재설계 현황

1 지방세 지출 개관

1 개 념

- '지방세 지출'은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으로서 '비과세'와 '감면'으로 구분, 이 중 감면이 지방세 지출 재설계 대상

※ (비과세) 납세의무 배제 (영구, 지방세법) ↔ (감면) 세부담 경감 (한시, 특례법)

2 현 황

- '22년 비과세·감면액은 16.8조원(감면액 7.4조), 비과세·감면율은 12.4%
 - 비과세·감면율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목표*('22년 13.3%) 이내 관리
 - * 직전 3개년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평균 + 0.5%p, ('23년 목표 : 13.0%)
- 재정분권·기업실적 개선 등 지방세수 증가와 지속적 감면 정비 등으로 비과세·감면율은 국세에 비해 낮은 수준

< 최근 5년간 지방세 지출 규모 및 비율 >



< 국세 비과세·감면율 >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잠정)
국세 징수액 (조원)	293.5	306.7	303.7	364.0	421.3
국세 비과세·감면액 (조원)	43.9	49.6	52.9	57.0	63.6
국세 비과세·감면율 (%)	13.0	13.9	14.8	13.5	13.1

3 운영 경과

-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 수립·국무회의 상정, 각 부처 통보(~2월 말)
- 관계부처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신설 건의 수렴(~3월 말)
- 예타·심층평가 실시(100억원↑ 신설·일몰도래 감면 3~7월)
- 지방자치단체 통합심사 실시(지자체·지방세연구원, ~7월)

2 지방세 지출 기본 원칙

1 목적의 타당성 분석

- 국가사무-지방사무 구분체계*를 고려하여 순수 국가사무는 지출 대상 지양
* 「지방자치법」상 지방사무의 범위, 지방 세출예산 편성 적합성 등 고려
- 지방세 지출이 지역 민생경제 회복, 지역균형 발전에 미치는 효과* 고려
* (예시) 지역내총생산(GRDP), 지역경제지표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장기·관행화된 감면은 감면목적 달성도 및 효과 등 분석·정비

2 세목의 적합성 평가

- 확산·촉진 정책과 보호·지원 정책을 구분하여 적정 세목 선택
- 특정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적* 성격 세목의 감면 종료·신설 배제
*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

3 지원 규모의 적정성 판단

- 국가 및 지방 예산지원, 지방세 내 유사·중복지원 여부 판단
※ 조세, 보조금 지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원 타당성 및 규모 결정
- 감면 대상·목적별로 구체화·세분화하고, 유사 감면은 유사 혜택 부여
※ 단, 유사한 경우에도 조세부담능력, 공익성 등에 따라 감면을 차등화 가능
- 감면대상·목적의 구체화·세분화를 통한 과도한 감면 배제
※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등 추상적·포괄적 목적 규정 정비

4 지출 방식의 최적화

- 세액공제*, 중과배제 등 감면 취지에 부합하는 특례 유형 설계
* 가액 높을수록 감면액이 증가하는 것 완화하기 위해 한도 설정(ex : 생초 감면 200만원 한도)
- 지방세 지출의 주기적 평가 및 재설계를 위해 3년 기한 원칙* 운영
* 유사 감면 간 일몰 일치 필요시 1~2년 설정 可(ex : 농어촌공사(24년), LH(22년→2년 연장))
- 지역 특성 반영이 필요한 지출은 조례를 통한 감면 활용 유도

3 지방세 지출 재설계 현황

※ (범례)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이하 “본 적용요령”에서 동일하게 적용

1 농·어업 분야

개정 전	개정 후
<① 자경농민 취득하는 농지·임야, §6①> ○ (감 면 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u>2023.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u>2026.12.31.</u>
<② 자경농민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 §6②> ○ (감 면 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u>2023.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u>2026.12.31.</u>
<③ 자동경운기 등 농기계류, §7①>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u>2023.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u>2026.12.31.</u>
<④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 §7②>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100% ○ (일몰기한) <u>2023.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100% ○ (일몰기한) <u>2026.12.31.</u>
<⑤ 자영어민 취득하는 어업권, 어선 등, §9①> ○ (감 면 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u>2023.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u>2026.12.31.</u>

개정 전	개정 후
<⑥ 농업법인(설립등기 2년) 영농 부동산, §11①> ○ (감 면 율) 취득세 75% ○ (일몰기한) 2023.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75% ○ (일몰기한) <u>2026.12.31.</u>
<⑦ 농업법인 영농·유통·가공 부동산, §11②>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3.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u>2026.12.31.</u>
<⑧ 어업법인 영어·유통·가공 부동산, §12①> ○ (감면요건) 별도 요건 無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3.12.31.	☞ 감면요건 신설, 일몰 3년 연장 ○ (감면요건) <u>어업경영정보 등록 의무화</u>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u>2026.12.31.</u>
<⑨ 농수협·산립조합중앙회 구매판매용 부동산 §14①>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2023.12.31.	☞ 감면대상자 일부 변경, 일몰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25% ※ <u>농협 중앙회 교육시설용 부동산</u> 限 감면 ○ (일몰기한) <u>2026.12.31.</u>
<⑩ 농·수·산·엽연초협동조합용 부동산, §14③>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100% ○ (일몰기한) 2023.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100% ○ (일몰기한) <u>2026.12.31.</u>
<⑪ 농협경제지주회사 구관, 생산검사용 부동산, §14의3>	☞ 감면 신설 ○ (감 면 율) <u>취득세·재산세 100%</u> ○ (일몰기한) <u>2026.12.31.</u>

< 개정내용 >

- (①~⑤) 농·어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등 어려운 현실을 감안, 안정적 영농·어업 활동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 (⑥~⑦) 영농 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확대 도모 및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감면 연장
 - (⑧) 영세어업인의 규모화 유도 및 협업적 경영을 통한 어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위해 감면 연장
 - 유사 성격의 농업법인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어업경영정보 등록’ 의무 부여토록 감면요건 신설
 - (⑨~⑪) 농·수산물 물가안정 도모, 농·어업 등 보호 지원을 위해 감면 연장하되,
 - 농협중앙회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감면 신설·재설계
- * (現) 농협중앙회의 교육시설용, 구매·판매용, 생산검사용 부동산 감면 →
(改) 농협중앙회 교육시설용 부동산限(§14①),
농협경제지주주식회사 구매·판매, 생산검사용 부동산(§14의3 신설)

2 사회복지 분야

개정 전	개정 후
<① 지역아동센터 부동산, §19의2>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일몰기한) <u>2023.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일몰기한) <u>2026.12.31.</u>
<② 노인복지시설 부동산 §20> ○ (감 면 율) - 무료노인복지시설 : 취득세 100%, 재산세 50% - 경로당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 100% - 유료노인복지시설 :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u>2023.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 무료노인복지시설 : 취득세 100%, 재산세 50% - 경로당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 100% - 유료노인복지시설 :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u>2026.12.31.</u>
<③ 청소년단체 등 감면, §21①> ○ (감 면 율) 취득세 75%, 재산세 100% ○ (일몰기한) <u>2023.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75%, 재산세 100% ○ (일몰기한) <u>2026.12.31.</u>
<④ 비영리법인 청소년수련시설용 부동산, §21②>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 50% ○ (일몰기한) <u>2023.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 50% ○ (일몰기한) <u>2026.12.31.</u>
<⑤ 국가유공자 등 대부금 취득 부동산, §29①>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u>2023.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u>2026.12.31.</u>
<⑥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부동산, §29②> ○ (감 면 대 상) 광복회 등 13개 단체 ○ (감 면 율)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 시설세·주민세 100% ○ (일몰기한) <u>2023.12.31.</u>	☞ 감면대상 확대, 일몰 3년 연장 ○ (감면대상) 광복회 등 13개 단체 「518 유공자법」상 3개 단체 추가 ○ (감 면 율)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 시설세·주민세 100% ○ (일몰기한) <u>2026.12.31.</u>

개정 전	개정 후
<⑦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부동산, §29③>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u>2023.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u>2026.12.31.</u>
<⑧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29④> ○ (감면내용) - 국가유공자 : 취득세·자동차세 100% ○ (일몰기한) 2024.12.31.	☞ 감면대상자 추가 ○ (감면내용) - 국가유공자 : 취득세·자동차세 100% - <u>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u> : <u>취득세·자동차세 50%</u> ○ (일몰기한) 2024.12.31.
<⑨ 출산·양육 주택, §36의5>	☞ 감면 신설 ○ <u>(감면대상자) '24~'25년 中 출산 부모*</u> * <u>출산前 1년 이내, 출산後 5년 이내 취득 &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자 限</u> ○ <u>(감 면 율) 취득세 100%*(500만원 한도)</u> * <u>최소납부세제(15%) 적용 제외</u>
<⑩ 비영리 재단법인 의료기관, §38④> ○ (감면대상) <u>민법상 재단법인 중 종교단체限 의료용 부동산</u> ○ (감 면 율) ※ 감염병전문병원 +10%p - 취득세 30%,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4.12.31.	☞ 감면 확대 ○ (감면대상) <u>민법상 재단법인 의료용 부동산</u> ○ (감 면 율) ※ 감염병전문병원 +10%p - (종교단체) 취득세 30%, 재산세 50% - (<u>종교단체外</u>) <u>취득세 15%, 재산세 25%</u> ○ (일몰기한) 2024.12.31.
<⑪ 대한적십자사(의료外) 부동산, §40의3.3>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u>2023.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u>2026.12.31.</u>

< 개정내용 >

- (①) 지역 사회 아동의 돌봄 및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감면 연장
- (②) 노인의 생활편의 등 사회안전망 제공 지원을 위해 감면 연장
- (③~④) 청소년 역량개발 및 복지향상, 지역주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감면 연장
- (⑤~⑧)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주거·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감면을 연장하되, 감면 단체·대상자 확대하여 재설계
 - 국가유공자 등 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대상에 「5.18유공자법」상 3개 단체* 추가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신체적 장애측면에서 동일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를 감면대상으로 추가하되 차등지원*
 - * (現) 국가유공자 100% 감면 →
 - (改) 국가유공자 100% 감면,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50% 감면
- (⑨)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 제고 및 양육지원을 위해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감면 신설
- (⑩) 국민건강보호, 공공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위해 종교단체 外비영리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확대*
 - * 취득세 15%, 재산세 25% / 감염병전문병원 10%p 추가 감면
- (⑪) 대한적십자사 수행업무의 공익성 고려하여 감면 연장

3 교육·과학기술 분야

개정 전	개정 후
<① 지방대학 수익용부동산, §41⑧>	☞ 감면 신설 ○ (감면대상자)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지방대학법인 ○ (감면대상) 수익용 부동산(① 또는②*) * ①신축하는 건축물, ②수익용기본재산 토지를 매각하고 3년 이내 취득하는 건축물(부속토지 포함) ○ (감 면 율)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 ○ (일몰기한) 2026.12.31.
<② 산학협력단 고유업무 부동산, §42③·§44③>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75% ○ (일몰기한) 2023.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75% ○ (일몰기한) 2026.12.31.
<③ 기초과학연구기관 등 부동산(§45의2)> ○ (감면대상자) 기초과학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100% ○ (일몰기한) 2023.12.31.	☞ 감면대상자 확대 및 감면율 재설계 ○ (감면대상자) 기초과학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u>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u>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6.12.31.
<④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47의2①> ○ (감 면 율) 인증등급별 감면차등 (취득세 5, 10%) ○ (일몰기한) 2023.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인증등급별 감면차등 (취득세 5, 10%) ○ (일몰기한) 2026.12.31.
<⑤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 §47의2②> ○ (감 면 율) 인증등급별 감면차등 (취득세 15, 18, 20%) ○ (일몰기한) 2023.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인증등급별 감면차등 (취득세 15, 18, 20%) ○ (일몰기한) 2026.12.31.

개정 전	개정 후
<⑥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47의2③> ○ (감 면 율) 취득세 10% ○ (일몰기한) <u>2023.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 ○ (일몰기한) <u>2026.12.31.</u>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47의5>	☞ 감면 신설 ○ (감면대상자) 환경친화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자 (설치의무가 없는자限) ○ (감 면 율) 취득세 25% ○ (일몰기한) 2026.12.31.

< 개정내용 >

- (①) 지방대학의 재정력·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하여,
 - 지방대학이 ①신축하는 건축물, ②수익용토지 매각하여 3년 내 취득하는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에 대해 감면 신설
 - * ②의 경우 종전 토지 매각대금 한도로 감면 적용 可
- (②) 산학협력단 고유업무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감면 연장
- (③) 유사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자를 경제인문 사회, 국방 및 해양과학 분야 연구기관으로 확대하되,
 - 국고보조 등 중복 지원, 국가 사무 해당 등을 감안하여 감면율 조정(100%→50%)
- (④~⑥)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비용 절감 등을 위한 친환경 건축물 지원을 고려하여 감면 연장
- (⑦) 친환경 자동차 보급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충전시설에 대한 감면 신설

4 문화·관광 분야

개정 전	개정 후
<문화예술·체육 공공기관 부동산, §52의2>	☞ 감면 신설 ○ <u>감면대상자</u> - (<u>문화예술 공공기관</u>) <u>예술의 전당, 한국콘텐츠진흥원,</u> <u>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u> - (<u>체육진흥 공공기관</u>) <u>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u> <u>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u> ○ (<u>감 면 율</u>) <u>취득세·재산세 50%</u> ○ (<u>일몰기한</u>) <u>2026.12.31.</u>

< 개정내용 >

- 대중의 문화향유 및 체육진흥활동 활성화, 관련 산업 발전 지원 등을 위하여 감면 신설

5 기업구조·재무조정 분야

개정 전	개정 후
<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영위기 중소기업 자산 매입·임대, §57의3③,⑤>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u>2023.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u>2026.12.31.</u>
<②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매각자산 재매입 §57의3④>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u>2023.12.31.</u>	☞ 감면 재설계,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감면 한도(재매수가 - 매각가) 설정 ※ 법 시행전 매각한 자산에 대해서는 한도 未적용 ○ (일몰기한) <u>2026.12.31.</u>
<③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거안정지원사업 매입 주택, §57의4>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u>2023.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u>2026.12.31.</u>
<④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시행자 부동산, §58①> ○ (감면대상) 분양·임대 부동산 ○ (감 면 율) <u>취득세·재산세 50%</u> ○ (일몰기한) <u>2023.12.31.</u>	☞ 감면 재설계, 3년 연장 ○ (감면대상) <u>분양·임대·직접사용</u> 부동산 ○ (감 면 율) <u>취득세·재산세*</u> 35% * (비수도권 재산세) 60% ○ (일몰기한) <u>2026.12.31.</u>
<⑤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입주기업 부동산§58②> ○ (감면내용) - 벤처기업집적시설·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중과배제 ○ (일몰기한) <u>2023.12.31.</u>	☞ 감면 재설계, 3년 연장 ○ (감면내용) -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u>취득세·재산세*</u> 50% * (비수도권 재산세) 60% -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 (§78) 이관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중과배제 ○ (일몰기한) <u>2026.12.31.</u>

개정 전	개정 후
<⑥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신·중축 건축물 §58③>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3년) 50% ○ (일몰기한) <u>2023.12.31.</u>	☞ 감면 확대,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3년) 50% * (비수도권 재산세) 60%(3년) ○ (일몰기한) <u>2026.12.31.</u>
<⑦ 창업(벤처) 중소기업 부동산, §58의3①,②> ○ (감 면 율) 취득세 75% 재산세 100%(3년) + 50%(2년) ○ (일몰기한) <u>2023.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75% 재산세 100%(3년) + 50%(2년) ○ (일몰기한) <u>2026.12.31.</u>
<⑧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부동산, §60③1·1의2> ○ (감면내용) - 학교內 : 취득세 75%,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학교外 : <u>취득세 75%, 재산세 50%</u> ○ (일몰기한) <u>2023.12.31.</u>	☞ 감면 재설계, 3년 연장 ○ (감면내용) - 학교內 : 취득세 75%,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학교外 : <u>취득세 50%, 재산세 50%*</u> * (비수도권 재산세) 60% ○ (일몰기한) <u>2026.12.31.</u>
<⑨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부동산, §60③2> ○ (감면내용)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중과배제 ○ (일몰기한) <u>2023.12.31.</u>	☞ 감면 종료 ○ (감면내용)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중과배제 ○ (일몰기한) <u>2023.12.31.</u>

< 개정내용 >

- (①~②) 중소기업 고용유지 및 유동성 공급 등을 고려하여 감면 연장하되,
 - (②) 중소기업의 자산 재매입에 대해 감면 한도(재매수가-매각가) 설정
- (③) 주택담보대출 미상환 연체자의 대출금 상환 및 주거 안정 제공 지원을 고려하여 감면 연장
- (④~⑥)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등을 위해 감면을 재설계하면서 연장
 - (④) 감면을 축소(50→35%)하되, 비수도권 재산세는 확대(50→60%)
 - (⑤) 종과세 배제 → 취득세·재산세 50%(비수도권 60%)
 - ※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은 현행 종과배제 특례를 2년간 연장하면서 산업단지 감면 규정(§78⑨)으로 이관
 - (⑥) 비수도권 재산세 감면을 확대(50%→60%)
- (⑦)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조기 안정 및 지속성장 지원 위해 감면 연장
- (⑧)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에 대한 감면은 초창기 창업기업 지원을 고려하여 일부 재설계하면서 감면 연장
 - 학교외 사업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감면을 축소(75→50%), 비수도권 지역의 재산세 감면을 확대(50→60%)
- (⑨)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은 대부분 임대로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면 종료

6 수송 · 교통 분야

개정 전	개정 후								
<① 3등급 이상 친환경 선박, §64④>	☞ 감면 신설 ○ 감면 내용 <table border="1"> <tr> <td>친환경 등급</td><td>취득세 세율특례</td></tr> <tr> <td>1등급</td><td>표준세율 - 2.0%p</td></tr> <tr> <td>2등급</td><td>표준세율 - 1.5%p</td></tr> <tr> <td>3등급</td><td>표준세율 - 1.0%p</td></tr> </table> ○ (일몰기한) 2026.12.31.	친환경 등급	취득세 세율특례	1등급	표준세율 - 2.0%p	2등급	표준세율 - 1.5%p	3등급	표준세율 - 1.0%p
친환경 등급	취득세 세율특례								
1등급	표준세율 - 2.0%p								
2등급	표준세율 - 1.5%p								
3등급	표준세율 - 1.0%p								
<② 대형항공사 항공기 재산세, §65단서> ○ (감 면 율) 재산세 50%(5년) ○ (일몰기한) 2023.12.31.	☞ 현행 1년 연장 ○ (감 면 율) 재산세 50%(5년) ○ (일몰기한) 2024.12.31.								
<③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68> ○ (추징 유예기간) 2년 ○ (추징 예외사유) 부적합판정, 폐차·폐기	☞ 추징 유예기간 및 예외사유 확대 ○ (추징 유예기간) 승용차 - 2년 승합, 화물, 특수차 - 3년 ○ (추징 예외사유) 현행 + 재난피해								
<③ 도시첨단물류단지 부동산, §71의2>	☞ 감면 신설 ○ (감면대상) 물류시설용 부동산 ○ (감면내용) - 시 행 자: 취득세 15%(+조례 10%可) - 입주기업: 취득세 40%(+조례 10%可) ○ (일몰기한) 2025.12.31.								

< 개정내용 >

- (①)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및 탄소중립 정책 지원을 위하여 친환경 등급별 차등하여 감면 신설
- (②)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제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대형항공사에 대한 감면 1년 연장

- (③)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의 경우 2년 이내에 매각이 어려움을 고려하여 추징 유예기간을 3년으로 완화하고, 재난피해에 대한 추징 예외사유 추가
- (④) 물류사업 서비스 개선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신설

7 국토·지역개발 분야

개정 전	개정 후
<① 국내복귀기업 사업용 부동산, §79의2>	☞ 감면 신설 ○ (감면대상자) '24년 이후 선정된 국내 복귀기업* * 과밀억제권역外 동일업종의 사업장 신·증설, 선정일부터 4년內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 (감 면 율) 취득세 50%(조례로 50% 추가 可) 재산세 75%(5년) ○ (일몰기한) 2026.12.31.
<② 기회발전특구 내 부동산, §80의2>	☞ 감면 신설 ○ (감면대상자)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 특구內 창업, 신·증설하는 기업 ○ (감면내용) - (창업*·이전) 취득세 50%+50%(조례 可) 재산세 100%(5년) + 50%(5년, 조례 可) * 수도권 : 취득세 50%+25%(조례), 재산세 100%(3년)+50%(2년) - (공장 신·증설) 취득세 50%+25%(조례 可) 재산세 5년간 75%(수도권 35%) ○ (일몰기한) 2026.12.31.
<③ 신흥·새마을금고 부동산, §87①,②>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100% ○ (일몰기한) 2023.12.31.
<④ 천재지변 자동차세 면제 규정, §92③>	☞ 자동차세 면제규정 삭제 ○ 「지방세법」에서 중복규정하고 있어 면제 규정 일원화를 위해 삭제
<⑤ 특별재난지역 사망자 등 감면, §92④⑤>	☞ 감면 신설 ○ (감면대상자) 사망자 및 유족(배우자·부모·자녀) ○ (감면율)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주민세**·자동차세 100% * 유족이 사망자 재산을 상속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限 ** 개인분, 사업소분(기본세율) 限 ※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재산 조례 및 의회의결로 감면 可

< 개정내용 >

- (①)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에 대해 감면 신설
- (②)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시대 실현 목적으로 도입하는 기회발전특구의 안착지원 위해 지방세 감면 신설
 -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창업, 특구內 창업 및 공장 신·증설하는 경우 감면
- (③) 서민 중소기업에 대한 지역서민금융서비스 제공 및 복지 등 사회공헌활동 지원을 위해 신흥·새마을금고 감면 연장
- (④) 천재지변으로 소멸·멸실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면제 규정이 「지방세법」 비과세 규정*과 중복되어 감면 삭제
 - * 천재지변으로 인해 소멸·멸실·파손된 경우 비과세(지법 §126, 지령121②4)
- (⑤)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통일된 지방세 특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內 지방세 감면 신설
 -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경우로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방세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 특별재난지역 內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하여는 조례 또는 의회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토록 규정 신설

⑧ 개인지방소득세 특례

개정 전	개정 후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부칙 §2> ○ (감면내용) 국세 공제·감면액의 10% ○ (일몰기한) 2023.12.31.	☞ 현행 3년 연장 ○ (감면내용) 국세 공제·감면액의 10% ○ (일몰기한) <u>2026.12.31.</u>

< 개정내용 >

- 영세 개인사업자·근로자 등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하여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연장

9 기타

개정 전	개정 후																									
<① 지자체 조례감면, §4> ○ (허용범위) §4① 각 호 열거된 경우* * 공익, 특정지역 지원, 감염병 지원 등 ○ (제한대상) 사치정 재산*, 고시 위임사항** *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감염병으로 영업금지 된 경우限 감면 可) ** 국가시책 反, 과세형평성 저해하는 경우 등 ○ (절차) 광역·기초 10억 초과시 예타의무, 총량초과시 다음연도 총량에서 차감	☞ 조례감면 자율성 확대 ○ (허용범위) 정책추진 필요 시로 확대 ○ (제한대상) 사치정 재산*, 시행령 위임사항** *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현행+특별재난지역으로 영업을 곤란한 경우 감면可) ** 국가시책 反, 과세형평성 저해하는 경우 등 ○ (절차) 광역 30억, 기초 10억 초과시 예타실시, 총량초과시 다음 다음연도 총량에서 차감																									
<② 자경농민·귀농인 사후관리 규정, §6①④> ○ 자경농민의 농지조성용 임야 - 의무 사용기간 요건 부재 ○ 귀농인의 농업용 시설 - 유예기간 및 목적사용 의무기간 요건 부재 ○ 귀농인 매각·증여·他용도 사용 시 - 정당한 사유 시 추정 제외	☞ 사후관리 규정 정비 ○ 자경농민의 농지조성용 임야 - 의무 사용기간 요건 신설 ○ 귀농인의 농업용 시설 - 유예기간 및 목적사용 의무기간 요건 신설 ○ 귀농인 매각·증여·他용도 사용 시 - 정당한 사유 관계없이 추정																									
<③ 어업법인 감면 요건, §12①> ○ 별도 요건 無	☞ 감면요건 신설 ○ 어업경영정보등록* 의무 부여 *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정보등록 의무 既부여('20년~)																									
<④ 위탁 직장어린이집 추정규정, §19③> ○ 추정요건 부재	☞ 추정규정 신설 ○ 추정요건 신설* * 위탁 未사용시, 매각·증여시 등 추정																									
<⑤ 직접사용 의무규정, §19의2·§20 등> <table><tr><th>법규정</th><th>감면대상</th><th>감면요건</th></tr><tr><td>§19의2</td><td>아동복지시설</td><td rowspan="2">설치·운영</td></tr><tr><td>§20</td><td>노인복지시설</td></tr><tr><td>§44의2①</td><td>박물관·미술관</td><td rowspan="2">사용</td></tr><tr><td>§44의2②</td><td>도서관·과학관</td></tr></table>	법규정	감면대상	감면요건	§19의2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	§20	노인복지시설	§44의2①	박물관·미술관	사용	§44의2②	도서관·과학관	☞ 감면요건 '직접사용'으로 일원화·명확화 <table><tr><th>법규정</th><th>감면대상</th><th>감면요건</th></tr><tr><td>§19의2</td><td>아동복지시설</td><td rowspan="4">직접 사용</td></tr><tr><td>§20</td><td>노인복지시설</td></tr><tr><td>§44의2①</td><td>박물관·미술관</td></tr><tr><td>§44의2②</td><td>도서관·과학관</td></tr></table>	법규정	감면대상	감면요건	§19의2	아동복지시설	직접 사용	§20	노인복지시설	§44의2①	박물관·미술관	§44의2②	도서관·과학관
법규정	감면대상	감면요건																								
§19의2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																								
§20	노인복지시설																									
§44의2①	박물관·미술관	사용																								
§44의2②	도서관·과학관																									
법규정	감면대상	감면요건																								
§19의2	아동복지시설	직접 사용																								
§20	노인복지시설																									
§44의2①	박물관·미술관																									
§44의2②	도서관·과학관																									

개정 전	개정 후
<⑥ 적격분할 감면 제외대상, §57의2③> ○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 요건 충족 시 취득세 감면	☞ 감면 제외대상 명확화 ○ <u>부동산 임대사업</u> 부문 등을 적격분할에서 제외 명확화
<⑦ 창업중소기업 감면 제외대상, §58의3⑥> ○ 포괄적*으로 규정 * 사업을 최초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	☞ 감면 제외대상 명확화 ○ <u>시행령*</u> 위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 개인이 추가로 동종법인 설립하는 경우 등
<⑧ 재산세 감면요건, §60③·83②> ○ '<u>직접사용</u>' 용어 부재	☞ 재산세 감면요건 명확화 ○ '<u>과세기준일 현재 직접사용</u>' 문언 추가
<⑨ 반환공여구역 사후관리 규정, §75의4> ○ 他 감면규정 대비 의무사용 요건 완화* *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 시	☞ 사후관리 규정 정비 ○ 의무사용 요건 정상화 * 직접사용일부터 2년 이내 매각·증여·他용도사용시
<⑩ 교환자동차 감면 중복 특례, §180> ○ 他 감면규정과 <u>중복특례</u> 배제	☞ 중복 특례 가능 명확화 ○ 他 감면규정과 <u>중복특례</u> 허용

< 개정내용 >

- (①) 지역 현안 대응력 강화 등을 위한 조례감면 자율성 확대
 - 조례감면 일반적 허용, 제한사항 시행령 직접 규정, 예타 기준 상향 등 제도 합리성 제고
- (②) 유사 감면대상자(자경농민·귀농인)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유예·의무사용 등 추정요건 정비를 통한 사후관리 규정 정비
- (③) 유사 감면대상자(농업법인) 간 형평성, 감면제도 효과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어업법인에 대하여 어업경영정보등록의무 부여
- (④)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위탁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 맞춤형 추정규정을 신설, 감면체계 정합성 및 형평성 제고
- (⑤) 감면 요건에 대하여 “설치·운영”, “사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조문을 ‘직접 사용’으로 명확화, 납세자 혼란 최소화
 - * 지방세 특례는 소유자가 부동산 등을 목적·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감면
- (⑥⑦) 감면제외 대상을 명확화하여 제도 합리성 제고
 - 적격분할 법인에 대한 감면대상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하고,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유형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 (⑧) 재산세 감면은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을 전제, 해당 문언을 규정하지 않은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특례체계 정합성 제고
- (⑨) 반환공여구역 감면은 他 감면보다 사후관리 규정이 완화된 되어 있어, 정비를 통한 과세 형평성 및 사후관리체계 정합성 제고
- (⑩) 교환자동차에 대한 특례는 세액공제 성격으로 유사 성격 조문과의 형평성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他규정과 중복 특례가 적용되도록 명확화

4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특례 신설·확대

구분	주요 내용	조문 (일몰기한)																					
① 농협 경제지주 회사 감면 신설	▪ (목적) 농·수산물 물가안정 도모, 농·어업 등 보호 지원 ▪ (대상) 구매·판매, 생산시설용 부동산 ※ 농협중앙회의 경우 §14①의 개정을 통해 교육시설용 부동산限 감면 ▪ (감면내용) 취득세·재산세 25%	제14조의3 (2026.12.31.)																					
② 국가유공자등 감면 확대	▪ (목적) 국가유공자 등 주거·생계안정 지원 ▪ (감면대상자 확대) <table border="1"> <thead> <tr> <th>조항</th><th>개정 前</th><th>개정 後</th></tr> </thead> <tbody> <tr> <td>§29②</td><td>국가유공자 단체</td><td>감면 단체 추가</td></tr> <tr> <td>감 면 대 상자</td><td>13개 단체</td><td>16개 단체 (+ 「5.18유공자법」 상 3개 단체 추가)</td></tr> <tr> <td>감 면 내 용</td><td>취득세·등록면허세· 주민세·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td><td>취득세·등록면허세· 주민세·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td></tr> <tr> <td>§29④</td><td>국가유공자 등 자동차</td><td>감면대상자 추가 (차등세율 적용)</td></tr> <tr> <td>감 면 대 상자</td><td>국가유공자 등</td><td>+ <u>보훈보상대상자</u>, <u>지원대상자</u></td></tr> <tr> <td>감 면 내 용</td><td>취득세·자동차세 100%</td><td>·(국가유공자 등) 취득세·자동차세 100% ·(<u>보훈보상대상자</u>, <u>지원대상자</u>) 취득세·자동차세 50%</td></tr> </tbody> </table>	조항	개정 前	개정 後	§29②	국가유공자 단체	감면 단체 추가	감 면 대 상자	13개 단체	16개 단체 (+ 「5.18유공자법」 상 3개 단체 추가)	감 면 내 용	취득세·등록면허세· 주민세·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취득세·등록면허세· 주민세·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29④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감면대상자 추가 (차등세율 적용)	감 면 대 상자	국가유공자 등	+ <u>보훈보상대상자</u> , <u>지원대상자</u>	감 면 내 용	취득세·자동차세 100%	·(국가유공자 등) 취득세·자동차세 100% ·(<u>보훈보상대상자</u> , <u>지원대상자</u>) 취득세·자동차세 50%	제29조제2항 (2026.12.31.) 제29조제4항 (2024.12.31.)
조항	개정 前	개정 後																					
§29②	국가유공자 단체	감면 단체 추가																					
감 면 대 상자	13개 단체	16개 단체 (+ 「5.18유공자법」 상 3개 단체 추가)																					
감 면 내 용	취득세·등록면허세· 주민세·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취득세·등록면허세· 주민세·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29④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감면대상자 추가 (차등세율 적용)																					
감 면 대 상자	국가유공자 등	+ <u>보훈보상대상자</u> , <u>지원대상자</u>																					
감 면 내 용	취득세·자동차세 100%	·(국가유공자 등) 취득세·자동차세 100% ·(<u>보훈보상대상자</u> , <u>지원대상자</u>) 취득세·자동차세 50%																					
③ 출산·양육용 주택 감면 신설	▪ (목적) 유례없는 저출산 위기극복 및 출산률 제고 ▪ (대상) '24~'25년 자녀를 출산한 부모* * 출산 前 1년 이내, 출산 後 5년 이내 취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자 限 ▪ (감면내용) 취득세 100%(500만원限) ※ 최소납부세제(§ 177의2, 15%과세) 적용 제외	제36조의5																					

구분	주요 내용	조문 (일몰기한)								
④ 비영리 의료재단 감면 신설	▪ (목적) 국민 건강 보호, 공공 의료서비스 지원 ▪ (대상) 민법상 재단법인의 의료용 부동산 ▪ (감면내용) 취득세 15%*, 재산세 25%* * 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각 감면율 +10%p 추가	제38조제4항 (2024.12.31.)								
⑤ 지방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감면 신설	▪ (목적) 지방대학의 재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 (대상) ① 또는 ② - ① 수익용기본재산 토지 위에 '26년말까지 신축하는 건축물 - ② '26년말까지 수익용 토지를 매각하고, 그 날부터 3년內 취득하는 건축물(부속토지 포함) ▪ (감면내용)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제41조제8항								
⑥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감면 신설	▪ (목적)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확대 지원 ▪ (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 (감면대상자) 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취득한 경우 限 ▪ (감면내용) 취득세 25%	제47조의5 (2026.12.31.)								
⑦ 공공기관 부동산 감면 확대	▪ (목적) 연구분야, 문화예술·체육분야 등 공공기관 지원 ▪ (대상) 해당분야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 (연구분야) 경제인문사회, 해양과학·국방 등 확대 - (문화예술·체육) 해당 공공기관 감면 신설 ※ 해당 조문에 열거된 대상자에 限 감면 적용 ▪ (감면내용) 취득세·재산세 50%	제45조의2 제52조의2 (2026.12.31.)								
⑧ 친환경선박 감면 신설	▪ (목적) 친환경선박 보급확대 및 탄소중립정책 지원 ▪ (대상) 친환경 1~3등급 인증을 받은 선박 ▪ (감면내용) 등급별 취득세 차등 경감<table><tr><th>친환경 등급</th><th>취득세 세율특례</th></tr><tr><td>1등급</td><td>표준세율 - 2.0%p</td></tr><tr><td>2등급</td><td>표준세율 - 1.5%p</td></tr><tr><td>3등급</td><td>표준세율 - 1.0%p</td></tr></table>	친환경 등급	취득세 세율특례	1등급	표준세율 - 2.0%p	2등급	표준세율 - 1.5%p	3등급	표준세율 - 1.0%p	제64조제4항 (2026.12.31.)
친환경 등급	취득세 세율특례									
1등급	표준세율 - 2.0%p									
2등급	표준세율 - 1.5%p									
3등급	표준세율 - 1.0%p									

구분	주요 내용	조문 (일몰기한)						
⑨ 도시첨단물류단지 감면 신설	▪ (목적) 도시 물류 서비스 개선 신산업 활성화 ▪ (대상)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입주기업 ▪ (감면내용) 물류시설용 토지 및 건축물 <table><tr><td>시 행 자</td><td>취득세 15% (+조례 10% 可)</td></tr><tr><td>입 주 자</td><td>취득세 40% (+조례 10% 可)</td></tr><tr><td>감면물건</td><td>물류시설용 토지 및 건축물</td></tr></table>	시 행 자	취득세 15% (+조례 10% 可)	입 주 자	취득세 40% (+조례 10% 可)	감면물건	물류시설용 토지 및 건축물	제71조의2 (2025.12.31.)
시 행 자	취득세 15% (+조례 10% 可)							
입 주 자	취득세 40% (+조례 10% 可)							
감면물건	물류시설용 토지 및 건축물							
⑩ 국내복귀기업 감면 신설	▪ (목적)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대상) '24년 이후 선정된 국내 복귀기업 - (요건) 과밀억제권역外 동일업종의 사업장 신·증설 선정일로부터 4년內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 (감면내용) 취득세 50%(조례 50%可), 재산세 75%(5년)	제79조의2 (2026.12.31.)						
⑪ 기회발전특구 기업 감면 신설	▪ (목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정착지원 ▪ (대상)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 특구內 창업·증설하는 기업 ▪ (감면내용) - (이전·창업) 취득세 50% + 50%(조례 可), 재산세 100%(5년) + 50%(조례(5년) 可) ※ (이전) 수도권은 감면 제외 ※ (창업) 수도권은 취득세 50%+ 25%(조례 可), 재산세 100%(3년)+50%(2년) - (공장 신·증설) 취득세 50%+25%(조례 可), 재산세 75%(5년) (수도권 재산세는 35%(5년))	제80조의2 (2026.12.31.)						
⑫ 특별재난지역 사망자 등 감면 신설	▪ (목적)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신속·통일적 지원체계 구축 ▪ (대상) 사망자 및 유족(배우자·부모·자녀) ▪ (감면내용)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 시설세·주민세**·자동차세 100% * 유족이 사망자 재산을 상속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限 ** 개인분, 사업소분(기본세율) 限	제92조제5항						

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1 지역 현안대응력 강화를 위한 조례감면 자율성 확대 (§4 등)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제한적 허용 ○ 각 호에 <u>열거된 경우*</u> 허용 * (각 호) 공익, 특정 지역 지원, 감염병 지원 등	☐ 일반적 허용 ○ 정책추진에 <u>필요한 경우</u> <u>일반적 허용</u>(각 호 삭제)
☐ 제한 대상 ○ (사치성 재산*) <u>감염병으로</u> <u>영업 금지된 경우만</u> 가능 *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등 ○ (국가시책에 반하는 경우 등- 고시 위임) 시행령상 기준*을 고려하여 고시한 사항에 <u>限</u> <u>조례감면을 제한</u> * 현재 실질적인 조례감면 제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	☐ 제한대상 실효성 제고 ○ (사치성 재산 <u>허용범위 확대</u>) <u>현행 + 특별재난지역 선포된</u> <u>경우로서 재산상 피해로 영업이</u> <u>곤란한 경우 추가</u> ○ (국가시책에 반하는 경우 등- 시행령 위임) 시행령에 <u>조례감면 제한사항*</u>을 확정하고 해당시 <u>조례감면 不</u> * 납부기한이 경과한 감면, 국가시 책에 반하는 감면, 지방세 과세정 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감면, 과세형평을 침해하는 감면 등
☐ 예타 등 절차 ○ (일률적 예타기준) 광역·기초 모두 10억원 초과시 실시 ○ (총량초과시 제재) <u>다음 연도</u> <u>총량에서 차감</u>	☐ 절차 합리성 제고 ○ (예타기준 이원화) 광역 30억원, 기초 10억원 초과시 실시 ○ (제재기준 보완) <u>다음 다음</u> <u>연도 총량에서 차감</u>

□ 개정 내용

[조례감면 활성화] (❶: 법 §4①, ❷: 법 §4②4, ❸: 법 §4②5 및 영 §2②)

❶ (범위) 제한적 허용 →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확대

- 현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효율적 정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로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

❷ (사치성재산 허용사유) 감염병 발생限 →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추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중대한 재산상 피해로 영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

* 산불로 인해서 골프장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변에 위치한 고급오락장이 지진해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등

❸ (국가시책에 반하는 경우 등 조례감면 불가)

감면불가 사항 고시 위임 → 감면불가 사항 시행령 위임 규정

- 시행령상 조례감면 불가 기준을 두어 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감면을 정할 수 없도록 체계 개선

[조례감면 절차 및 사후관리] (❹: 영 §2③, ❺: 법 §4⑦ 및 영 §2⑨)

❹ (예타 의무화 대상) 10억원 ↑ → 광역 30억원, 기초 10억원 ↑

- 예비타당성 의무대상 기준인 예상감면액을 시도와 시군구를 구분하여 이원화, 조례감면의 효율성 제고

❺ (총량 초과시 삭감) 다음 연도에 삭감 → 다음다음 연도에 삭감

- 총량 초과 여부 확인이 지자체 결산시점 이후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시기 조정(다음 연도 → 다음다음 연도)

□ 적용요령

- '24. 1. 1. 이후 감면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 초과 시 제재기준과 관련된 개정사항은
 - 2023년 회계연도에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부터 적용(법 부칙 §3)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전	개정 후
<u>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u>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u>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u> <신 설>	②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u> 가. 「<u>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u>

개정 전	개정 후
<u><신 설></u>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u>지방세 감면</u>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 ⑥ (생략)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u>그 다음</u>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u>경우</u>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로서 해당 재난으로 입은 중대한 재산상 피해로 영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 ----- ----- <u>지방세 감면</u>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u>그 다음</u> 다음 ----- ----- ----- ----- ----- -----

개정 전	개정 후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 법률 부칙

제3조(지방세 감면규모 초과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3년 회계연도에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현행	개정안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생략)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는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u>경과된 지방세의 감면인지 여부</u>	1. ----- ----- ----- <u>경과된 사항</u>
2.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에 따른 지방세 과세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	2. ----- ----- ----- -----

현행	개정안
④ ~ ⑧ (생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 법 제4조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해당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초과한 경 우에는 법 제4조제7항 본문에 따 라 그 초과한 금액의 2배에 해당 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 세 감면규모에서 차감한다.	⑨ ----- ----- ----- ----- ----- ----- ----- 다음 다음 ----- -----.

■ 대통령령 부칙

제2조(지방세 감면의 신설 등을 위한 관련 전문기관 등에서의 분석·평가 의뢰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지방세 감면의 신설·연장·변경에 관한 분석·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석·평가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2 자경농민, 귀농인 사후관리 규정 보완 (§6①④)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자경농민·귀농인 감면 ○ 감면 목적 ¹⁾ 및 물건 ²⁾ 이 동일함에도, <u>사후관리 규정 상이</u> 1)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 2) 영농용 농지·임야, 농업용 시설	☐ <u>사후관리 규정 미비점 보완</u> ○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정사유가 누락된 <u>일부 규정 통일적 정비</u>

□ 개정내용

감면대상	농지		농지조성 임야		농업용시설	
	前	後	前	後	前	後
① 목적사용 개시 유예기간 (개정조문 : 귀농인 시설 §6④3다)						
자경농민	2년	2년	2년	2년	1년	1년
귀 농 인	2년	2년	2년	2년	×	1년
② 목적사용 의무기간 (개정조문 : 자경농민 임야 §6①2, 귀농인 시설 §6④4)						
자경농민	2년	2년	×	2년	2년	2년
귀 농 인	3년	3년	3년	3년	×	3년
③ 의무기간 미준수시 추정 예외 (개정조문 : 귀농인 §6④단서 및 각 호)						
자경농민	×	×	×	×	×	×
귀 농 인	○	×	○	×	○	×

① 사용개시 유예기간

- 귀농인의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도 유예기간(1년)을 부여토록 개선, 납세편의 및 과세형평성 제고

② 목적사용 의무기간

- 자경농민의 농지조성용 임야는 2년, 귀농인의 농업용시설은 3년의 의무사용 기간을 부여토록 개선, 감면목적 달성 및 악용 방지

③ 의무기간 미준수시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 귀농인에 대해서도 의무 사용기간 내 매각·증여·他용도 사용시에는 사유에 관계없이 추징토록 개선, 과세형평성 및 정합성 제고

□ 적용요령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추징규정 적용(부칙 §11)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개정 전	개정 후
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u>2023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생략) 2. <u>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u>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자경농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u>2023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1. ~ 3. (생략) ③ (생략)	----- ----- ----- ----- ----- ----- <u>2026년 12월 31일</u> ----- ----- ----- ----- ----- -----. 1. (현행과 같음) 2. <u>직접</u> ----- ----- ----- ----- ② ----- ----- ----- ----- ----- ----- ----- <u>2026년 12월 31일</u> -----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	개정 후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u>귀농인이</u> <u>정당한 사유 없이</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 ----- ----- ----- ----- ----- ----- ----- ----- ----- ----- ----- ----- ----- ----- ----- <u>. ---- 귀농인이</u> ----- ----- ----- ----- ----- ----- ----- <u>.</u>
1. <u>귀농일부터</u> 3년 이내에 주민등	1. <u>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u>

개정 전	개정 후
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u>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3. <u>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u>	----- ----- ----- ----- ----- ----- ----- 2. <u>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u> ----- ----- ----- ----- ----- ----- ----- ----- ----- 3. <u>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u>가.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u> <u>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u> <u>다. 농업용 시설의 취득일부터 1</u>

개정 전	개정 후
4. <u>직접 경작한</u>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u>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u> 4. <u>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한</u> --- ----- -----

■ 법률 부칙

제11조(자경농민 등에 대한 경감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경농민 및 귀농인이 경감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요건 신설 (§12① 등)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감면목적이 유사한 농·어업법인 간 감면요건 상이 <table border="1"> <tr> <th>감면대상</th><th>감면요건</th></tr> <tr> <td>농업법인</td><td>농업경영정보등록 必</td></tr> <tr> <td>어업법인</td><td>x</td></tr> </table> ※ (농어업경영정보) 농지·어선 등 농어업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감면대상	감면요건	농업법인	농업경영정보등록 必	어업법인	x	□ <u>어업법인에 대한 감면요건 정비</u> ※ 농업법인과 감면요건 일치 <table border="1"> <tr> <th>감면대상</th><th>감면요건</th></tr> <tr> <td>농업법인</td><td>농업경영정보등록 必</td></tr> <tr> <td>어업법인</td><td>어업경영정보등록 必</td></tr> </table>	감면대상	감면요건	농업법인	농업경영정보등록 必	어업법인	어업경영정보등록 必
감면대상	감면요건												
농업법인	농업경영정보등록 必												
어업법인	x												
감면대상	감면요건												
농업법인	농업경영정보등록 必												
어업법인	어업경영정보등록 必												

□ 개정내용

- 어업법인에 대하여 농업법인과 동일하게 감면요건에 “어업 경영정보등록” 의무 추가

※ 신설 어업법인의 경우 등록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 고려 “설립등기일로부터 90일이내에 등록된 경우”까지 감면대상에 포함, 농업법인도 동일 규정 中

□ 적용요령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2)
- 다만, 납세자의 수용성 등 적용기간 고려, 개정 후 1년간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감면이 가능하도록 부칙상 특례 부여(부칙§9)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u>2023년 12월 31일</u> 까지 경감한다. 1.·2. (생략) ②·③ (생략)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 ----- - 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 ----- ----- ----- ----- ----- <u>2026년 12월 31일</u> -----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법률 부칙

제9조(종전 어업법인의 감면에 관한 특례) 종전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업법인(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른 어업법인은 제외한다)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적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조의3(지방세가 감면되는 어업 법인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 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설립등 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한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관련 규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농업·농촌과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지, 축사, 임야,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농협경제지주주식회사 감면 신설 (§14의3)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농·수협·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구매·판매, 교육시설 등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 '23.12.31.	☐ 감면 연장 (감면대상자 일부 변경 포함)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현행과 같음) ※ (구매·판매 부동산 감면대상자 변경) 농협중앙회 → 농협경제지주회사 ○ 일몰기한 : '26.12.31.
☐ 농·수·산·엽연초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고유목적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 100% ○ 일몰기한 : '23.12.31.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내용

- 농수산물 물가안정 도모, 농어업 등 보호·지원을 위해 감면 연장 하되, 일부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감면 재설계

농협 관련 감면대상 부동산	개정 前	개정 後
1.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 사업용	중앙회(§14①)	경제지주(§14의3)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3. 농어민 교육시설용		중앙회(§14①)

적용시기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u>2023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3호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u>2026년 12월 31일</u>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③ ----- ----- ----- -----

개정 전	개정 후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영업초생 산림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u>2023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④·⑤ (생략) <u>제14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u> <u>「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u>	----- ----- ----- ----- ----- ----- ----- ----- <u>2026년</u> <u>12월 31일</u>-----. ④·⑤ (생략) <u><삭 제></u>

개정 전	개정 후
<u>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u> <u>1.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u> <u>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u> <u>3.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u> <u><신 설></u>	<u>제14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u> <u>「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u> <u>1.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u> <u>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u>

5 위탁 직장어린이집 사후관리 규정 보완 (§19③)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직장어린이집 추정 요건 ○ (직접사용 목적 부동산) 직접 未사용, 매각·증여시 등 추정 ○ (위탁사용 목적 부동산) 부재	☐ 위탁 직장어린이집 추정 신설 ○ (직접사용 목적 부동산) 현행과 같음 ○ (위탁사용 목적 부동산) 위탁 未사용, 매각·증여시 등 추정

☐ 개정내용

- 위탁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맞춤형 추정요건 신설
 -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위탁하여 운영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용도로 위탁 운영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他용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정

구 분	개정 前		개정 後	
	추정 요건	적용 규정	추정 요건	적용 규정
직접 사용	○	보칙(§178①)	○	개별 신설 (§19③)
위탁 사용	X	-	<u>○</u>	

※ 일반적 추정규정(§178①)은 직접사용을 규정한 대상限 적용 可

☐ 적용요령

- '24. 1. 1. 이후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4)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② (생략) <u><신설></u>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 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 세를 추징한다. 1. 유치원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 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 로 사용하는 경우 2.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전	개정 후
	<u>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위탁하여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u> <u>나. 해당 용도로 위탁하여 운영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u>

■ 법률 부칙

제4조(직장어린이집의 감면 취득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장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그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6 감면요건 “직접 사용” 의무규정 통일 (§19의2·§20·§44의2)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감면요건 ○ (일반적) “직접 사용” 규정 ○ (예외) 일부 조문에서 “사용”, “설치·운영”으로 달리 규정 ※ 4개 조문에서 달리 규정 中	☐ 감면요건 명확화 ○ “직접 사용”으로 일원화

☐ 개정내용

- 감면요건을 “설치·운영”,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조문에 대해 “직접 사용”으로 명확화, 지방세 특례체계 정합성 및 통일성 제고

법규정	감면대상	감면 요건	
		前	後
§19의2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	직접 사용
§20	노인복지시설		
§44의2①	박물관·미술관	사용	
§44의2②	도서관·과학관		

☐ 적용요령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 운영상 동일하게 적용하던 사안으로 개정 전후의 실체적 내용 변경 無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u>지역아동센터</u> 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u>지역아동센터</u> 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u>2023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u>지역아동센터</u> 로 직접 <u>사용하기</u> ----- ----- ----- ----- ----- ----- <u>2026년 1</u> <u>2월 31일</u> -----.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u>노인복지시설</u> 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u>2023년 12월 31일까지</u> 감면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u>노인복지시설</u> 로 직접 <u>사용하기</u> ----- ----- ----- ----- <u>2026년 12월 31일</u>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u>노인복지시설</u> 에 <u>사용하기</u>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u>노인복지시설</u> 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	1. ----- ----- <u>노인복지시설</u> 로 직접 <u>사용하기</u> ----- ----- ----- ----- <u>현재 노인복지시설</u> 로 ----- -----

개정 전	개정 후
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u>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u>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u>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u>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 ----- ----- 포함한다 ----- ----- ----- -----. ----- ----- ----- ----- ----- ----- -----. 2. ----- <u>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u> ----- ----- ----- -----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

개정 전	개정 후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u>미술관에 사용하기</u>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 또는 <u>미술관에 직접 사용하는</u>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u>과학관에 사용하기</u>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도서관 또는 <u>과학관에 직접 사용하는</u>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① ----- --- <u>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하기</u> --- ----- ----- ----- <u>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하는</u> ----- ----- ----- ----- ----- -----. ② ----- --- <u>과학관으로 직접 사용하기</u> --- ----- ----- ----- <u>과학관으로 직접 사용하는</u> ----- ----- ----- ----- ----- -----.

7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및 연장 (§29②④)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국가유공자 등 대부금 취득 부동산 감면 (§29①) ○ 취득세 100% ○ 일몰기한 : '23.12.31.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6.12.31.
☐ 국가유공자 등 단체 부동산 등 감면 (§29②) ○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 시설세·주민세 100% ○ 일몰기한 : '23.12.31.	☐ 감면 연장 및 감면단체 확대*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6.12.31. * 「5.18.유공자법」 상 3개 단체 추가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內 부동산 감면 (§29③)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 '23.12.31.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6.12.31.
☐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감면 (§29④) ○ (국가유공자) 취득세·자동차세 100% ○ (신 설)	☐ 감면대상자 추가·재설계 ○ (국가유공자) 현행과 같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 취득세·자동차세 50% * 국가 수호·안전보장, 국민 생명·재산 보호 무관 업무·교육 중 상이자 **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갖춘 자 중 본인의 과실 등으로 사망·상이자
○ 일몰기한 : '24.12.31.	○ 일몰기한 : '24.12.31.

□ 개정내용

- 국가에 공헌·희생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주거·생계 안정 지원 필요하여 감면 연장하되,
- 관련 법 개정 및 유사 납세자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 확대 및 재설계

구분	개정 前	개정 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취득 부동산	광복회 등 13개 단체	현행 13개 단체 + 「5.18.유공자법」상 3개 단체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취득세·자동차세 100% 감면	현행+보훈보상대상자 등* 취득세 자동차세 50% 감면 * 보훈보상자, 지원대상자

□ 적용요령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②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받은 사람이 취득(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① ----- ----- ----- ----- ----- ----- ----- -----

개정 전	개정 후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u>2023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1. 2. (생략) ② 제1호 각 목의 단체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의 지방세를 <u>2023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1. 대상 단체 가. ~ 라. (생략) <u><신설></u> 2. (생략)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重傷痍者)와 그 유족 또는 그 중상이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	----- ----- ----- <u>2026년 12월 31일</u>-----. 1. 2. (현행과 같음) ② ----- ----- <u>2026년 12월 31일</u>-----. 1.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u>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에 따라 설립된 <u>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u>, <u>5·18민주유공자유족회</u> 및 <u>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u> 2.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신 설 > ※ 주택·상시거주·산출세액·배우자에 관한 용어정의 차용을 위해 §36의3(생초 규정) 개정 포함	□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 감면대상 : '24.1.1.~'25.12.31. 자녀를 출산한 부모 ○ 감면요건 : - ①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 '24.1.1.이후 취득한 주택에 限 - ②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 ③ 주택가액 12억원↓ ○ 감면율 : 취득세 100% (500만원 한도) ※ 100% 감면시 부과되는 최소납부세제(15%)도 제외

□ 개정내용

- (감면대상) 특례 신설 이후 추가로 출생(~'25.12.31. 限)하는 자녀의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 포함)가 취득*하는 1주택

※ 유상취득 뿐만 아니라 무상취득(상속·증여 등), 원시취득(신축 등)도 포함

- (감면요건) 출생한 자녀와 실거주 등 요건 충족 시 500만원 한도 감면
 -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가액(「지방세법」 §10)이 12억원 이하
 - (실거주) 출산 자녀와 부모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거주하는 경우로 제한
 - (1가구1주택) 출산지원의 정책목적 등 고려 다주택자 감면 배제
 - ※ 다만,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 (취득기한) 주택 취득 소요기한 등 고려, 출산일 이후 5년 이내 취득 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 취득(‘24.1.1. 이후 취득하는 경우 限) 경우
- (감면액 한도) 산출세액 500만원 限 100% 감면*
 - * 최소납부세제(지특법§177의2) 적용 배제

□ 적용요령

- ‘24. 1. 1. 이후 출산하고 주택을 취득하거나(부칙 §5①),
 ‘24. 1. 1. 이후 취득하고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5②)

②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u><신 설></u>	제36조의5(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개정 전	개정 후
	<u>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u> <u>1.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u> <u>2.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u> <u>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u>

[illegible]

개정 전	개정 후
1.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u>이 조</u>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생략)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u>이 조</u>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3. (생략) ⑤ (생략)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	1. ----- ----- ----- <u>이 조 및 제36조의5</u>----- ----- -----.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 ----- ----- ----- ----- ----- ----- ----- <u>이 조 및 제36조의5</u>----- ----- 2.·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

개정 전	개정 후
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감면율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u>제36조</u>,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	한) ①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u>제36조, 제36조의5</u>----- ----- ----- ----- ----- -----

개정 전	개정 후
조,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법률 부칙

제5조(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의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서 해당 자녀의 부모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 중 자녀의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부분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1주택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u><신 설></u>	제17조의4(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및 추정 예외 사유) ① 법 제36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개정 전	개정 후
<u>제17조의4</u> (생략)	<u>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u> <u>② 법 제36조의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제1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u>제17조의5</u> (현행 제17조의4와 같음)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민법상 재단법인 중 종교단체 의료용 부동산 ☐ 감면대상자 : <u>민법상 재단법인</u> <u>중 종교단체 의료기관</u> ☐ 감면율 : ※ 감염병전문병원+10%p - (종교단체) 취득세 30% 재산세 50%	☐ 감면대상자 확대 및 재설계 ☐ 감면대상자 : <u>민법상 비영리</u> <u>재단법인 의료기관</u> ☐ 감면율 ※ 감염병전문병원+10%p - (종교단체) 취득세 30% '재산세 50% - (<u>종교단체外</u>) <u>취득세 15%</u> <u>재산세 25%</u>

☐ 개정내용

- 국민건강 보호, 공공의료서비스 확보 등을 위해 종교단체外 비영리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신설*

* 취득세 15%, 재산세 25% / 감염병전문병원 10%p 추가 감면

☐ 적용요령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u>	④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u>취득세의 100분의 1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를, -</u> ----- <u>재산세의 100분의 2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u>
1. <u>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u>	1. <삭 제>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10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 특례 신설 (§41⑧ 등)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신 설 >	☐ 지방대학 수익용 부동산 감면 신설 ○ 감면대상자 :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지방대학 ○ 감면요건 : ① & (②또는③) - ①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지방대학이 취득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 ②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하는 건축물 - ③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익용기본재산용 토지를 매각하고 3년 이내 취득하는 건축물(부속토지 포함)* * ③의 경우 종전토지 매각대금 한도로 감면 ○ 감면율 :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 개정내용

- 지방대학의 재정력·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방대학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신설
- ①'26년까지 수익용 기본재산 토지위에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간) 50% 경감

- ②'26년까지 수익용 기본재산 토지를 매각한 경우로서, 매각 후 3년 이내 취득하는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간) 50% 경감 ※ ②의 경우 종전 토지의 매각대금 한도로 감면

□ 적용요령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②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 ⑦ (생략) <u><신설></u>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방대학법인”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하 이 조에서 “수익용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제2호의 경우 매각대금의 범위

개정 전	개정 후
	<u>내로 한정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제2호의 경우 매각대금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u> <u>1. 해당 지방대학법인의 수익용기 본재산인 토지 위에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축 및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건축물</u> <u>2. 해당 지방대학법인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익용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u>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

개정 전	개정 후
위 등) ① ~ ④ (생 략) <u><신 설></u>	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법 제41조제8항 각 호 외의 부</u> <u>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수익용기본재산”이란 「대학</u> <u>설립·운영 규정」 제7조제1항에</u> <u>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말한다.</u>

□ 사립학교법

- 제5조(자산)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그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사업)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종류 3. 사업 경영에 관한 자본금 4. 사업 경영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사업의 시기(始期) 및 기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대학설립운영규정

- 제2조(설립인가기준 등) ① 대학을 설립하려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

설립의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
2.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6조에 따른 확보 기준의 2분의 1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할 것(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①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 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국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가 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8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1.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00억원
2. 전문대학 200억원
3. 대학원대학 100억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의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별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 제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①학교법인은 그가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11 기초과학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등 재설계 (§45의2, §52의2 등)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기초과학 연구기관 등 부동산 감면(법 §45의2) ○ 감면대상자 -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감면율 : 취득세·재산세 100% ○ 일몰기한 : '23.12.31.	☐ 감면대상자 확대 및 재설계(법 §45의2, §52의2) ○ 감면대상자 확대 - (현행과 같음) -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 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문화예술 공공기관) 예술의 전당,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 (체육진흥 공공기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 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 감면율 :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 '26.12.31.
☐ 그 외 민간단체에 대한 감면(법 §45·§52, 영 §22·§26) ○ <u>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기관限 감면</u>	☐ 그 외 민간단체에 대한 감면(법 §45·§52, 영 §22·§26) ○ <u>공공기관은 감면대상에서 제외</u>

□ 개정내용

○ (감면대상자 확대) 22개소 → 57개소(+35개소)

- (연구 공공기관) 과학기술 외에도 경제인문사회, 국방 및 해양 과학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감면 대상 확대

- ✓ (경제인문사회 연구기관(24개소))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연구 개발을 통한 외부경제효과 및 교육·의료·사회보장 등 가치재 공급에 기여
- ✓ (국방과학연구소) 무기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통한 국방력 강화 및 자주국방 완수에 기여
- ✓ (한국국방연구원)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의 체계적 연구·분석을 통한 합리적 국방정책 수립에 기여
-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 및 수산자원의 체계적 연구 개발을 통한 국가해양과학기술의 발전 및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기여

- (문화예술·체육진흥 공공기관) 대중의 문화향유 및 체육진흥활동 활성화, 관련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감면 신설

- ✓ (예술의전당) 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 문화예술 교육사업 및 조사연구
-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전문인력양성 등
-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교육 등
- ✓ (한국영상자료원) 영상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영상자료의 수집·보존·복원
- ✓ (국민체육진흥공단) 생활·전문·장애인 체육진흥 및 서울올림픽 시설물 운영
- ✓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원 운영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 (대한체육회) 국대선수촌 운영 등 전문체육진흥, 동호인 활동 등 생활체육진흥
- ✓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경기단체 지원 및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 한편, 他규정(법 §45·§52, 영 §22·§26)에서 연구·문화예술·체육 분야 공공기관에 대하여 “감면대상자를 고시”로 정하도록 한 문언 삭제

○ (감면율) 국고보조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 감면대상자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적용(종전 22개소: 100%→50%로 조정)

□ 적용요령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

개정 전	개정 후
<u><신 설></u>	6. 「<u>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u>」에 따른 <u>한국해양과학기술원</u> 제52조의2(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체육 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 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 한다. 1. 「<u>국민체육진흥법</u>」에 따른 대 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 단 2. 「<u>문화산업진흥 기본법</u>」에 따 른 <u>한국콘텐츠진흥원</u> 3. 「<u>문화예술진흥법</u>」에 따른 예 술의 전당 4. 「<u>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영화진흥위 원회</u> 및 <u>한국영상자료원</u> 5. 「<u>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태권도진흥재단</u>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학술단체의 정의 등)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란 「학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술의 연구·발표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한다.	제22조(학술단체의 정의 등) ① ----- ----- ----- ----- ----- ----- ----- <u>이를 제외한다.</u>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진흥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공공기	제26조(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 ① ----- ----- ----- ----- ----- ----- ----- . -----

개정 전	개정 후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u>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한다.</u> 1. ~ 4. (생략)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u>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한다.</u> ③ (생략)	----- ----- <u>이를 제외한다.</u> 1. ~ 4.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u>이를 제외한다.</u> ③ (현행과 같음)

참고1

감면대상자 현황

분야	세분	종전 감면대상자	세분	추가 감면대상자
① 연구분야 (§45의2)	기초과학 (22)	기초과학연구원	경제·인문·사회 (24)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국토연구원
② 문화체육분야 (§52의2)	×		기타 (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문화예술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예술의전당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체육진흥 (4)	한국영상자료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 학술단체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45조의2에 따른 단체는 제외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학술단체의 정의 등) ① 법 제

4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란 「학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술의 연구·발표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문화예술 및 체육 단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가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진흥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한다.

1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특례 신설 (§47의5)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신 설 >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특례 신설 ○ (감면대상) 환경친화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자限) ○ (감면율) 취득세 25%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내용

- 친환경 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해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감면대상)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
 - *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
 - (감면대상자) 해당 충전 시설의 설치 의무가 없는 자*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감면내용) 취득세 25% 경감

□ 적용요령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2)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u><신 설></u>	제47조의5(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에 대한 감면)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설치 의무가 없는 자로 한정한다)가 「지방세법」 제6조제4호에 따른 에너지 공급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3 법인 적격분할의 감면제외 대상 명확화 (§57의2③)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법인세법상 적격분할로 재산 취득시 감면 ☐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 요건 충족 시 취득세 감면	☐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에서 제외되는 사업 감면 배제 ☐ 부동산 임대사업 부문 등을 적격분할에서 제외 명확화

□ 개정내용

- 지방세 감면 제도 합리성 및 조세 특례 정합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해 적격분할 감면 제외* 명확화

* (법인세법 시행령 §82의2③) 임대업을 주업으로하는 사업, 토지·건축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80%이상인 사업부문

□ 적용요령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2)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개정 전	개정 후
당하는 재산을 2024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 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 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 (생략) 2.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말한다)의 요 건을 갖춘 <u>분할</u>로 인하여 취득 하는 재산. 다만, 분할등기일부 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 의3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 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3. ~ 7. (생략) ④ ~ ⑩ (생략)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u>분할(같은 법 제</u> <u>4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u> <u>제외한다)</u>----. ----- ----- ----- ----- ----- ----- -----. 3. ~ 7. (현행과 같음) ④ ~ ⑩ (현행과 같음)

□ 법인세법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법 제46조제3항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14 캠프의 중소기업구조개선 지원사업 감면 연장 등 (§57의3③~⑤)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구조개선 중소기업 자산 매입 감면 (중소기업→한국자산관리공사) ☐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 '23.12.31. ☐ 중소기업의 재매입시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중소기업) ☐ 취득세 100% ☐ 일몰기한 : '23.12.31.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6.12.31. ☐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취득세 100%* * <u>감면한도(중소기업이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매각한 가액 한도</u>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내용

- 중소기업 고용유지 및 유동성 공급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중소기업구조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되,
- 경영정상화에 따라 중소기업이 재매입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종전에 매각한 가액을 한도*로 취득세 감면

* 개정 전에는 한도없이 감면되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재매수가가 종전 매각가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부분은 과세

□ 적용요령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 중소기업이 再매입하는 자산에 대한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 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자산에 대하여는
 - 개정 이후 해당 자산을 再매입 하더라도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개정된 감면 한도 未적용, 부칙 §10)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①·② (생략)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u>2023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③ ----- ----- ----- ----- ----- ----- <u>2026년 12월 31일</u> ----- -----.
④ 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매각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u>2023년 12월 31일까지</u> 취득세를 면제한다. <u><단서 신설></u>	④ ----- ----- ----- ----- ----- <u>2026년 12월 31일</u> ----- <u>일-----</u> . 다만, <u>취득한 가액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u>
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u>2023년 12월 31일까지</u>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중	⑤ ----- ----- ----- ----- ----- <u>2026년 12월 31일</u> ----- -----

개정 전	개정 후
소기업에 임대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 ----- -----.

■ 법률 부칙

제10조(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의 취득세 면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이 법 시행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면제에 관하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57조의3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면제한다.

15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및 재설계 (§58①~③, §78⑨)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분양·임대 부동산 감면 (§58①) ○ (감면율) 취득세·재산세 50% ○ (대상) 분양·임대 부동산 ○ 일몰기한 : '23.12.31.	☐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u>취득세·재산세*</u> 35% * (비수도권 지역) 재산세 60% ○ 분양·임대·<u>직접사용</u> 부동산 ○ 일몰기한 : '26.12.31.
☐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입주 기업 부동산 특례 (§58②) ○ (벤처기업집적시설·산업기술단지)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대도시 중과세 배제 ○ 일몰기한 : '23.12.31.	☐ 감면 재설계 등 ○ (벤처기업집적시설) (재설계) <u>취득세·재산세*</u> 50% * (비수도권 지역) 재산세 60% ○ (산업기술단지) (법 제8조로 이관) <u>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대도시 중과세 배제</u> ○ 일몰기한 : '26.12.31. (산업기술단지는 '25.12.31.)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신·중축 건축물 감면 (§58③) ○ 취득세·재산세(3년) 50% ○ 일몰기한 : '23.12.31.	☐ 감면 연장 및 확대 ○ 취득세·재산세*(3년) 50% * (비수도권 지역) 재산세(3년) 60%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내용

-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감면 연장하되, 유사시설과의 형평성 및 비수도권 우대 고려 감면 재설계

- (시행자) 감면율 축소하되, 비수도권 재산세는 감면율 확대
- (입주기업)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중과배제 특례를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특례방식(감면율 적용)으로 전환 및 비수도권 재산세 감면율 확대

※ 산업기술단지는 중과배제 체계를 유지하며 산업단지 감면(§78⑨)으로 이관,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규정 일몰 도래 시('25년) 종합적 검토

- (신증축자) 비수도권 재산세 감면율 확대

구 분	감면대상	개정 前	개정 後
시행자 (개발·조성 분양·임대)	벤처기업집적시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취득세 50% 재산세 50%	취득세 35% 재산세 60%(수도권 35%)
입주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	중과세 배제(수도권) :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세액감면(전국) 취득세 50% 재산세 60%(수도권 50%)
	산업기술단지		현행유지(조문이관 →§78⑨)
신증축자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취득세 50% 재산세 50%(3년)	취득세 50% 재산세 60%(수도권 50%)(3년)

⇒

□ 적용요령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 다만, 이 법 시행 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종전의 제58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개정 규정에 따른 감면율(50%→60%) 적용(부칙 §6)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u>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3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 ----- -----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이 절에서 “벤처기업”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u>취득세 및 재산세(벤처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u> ---- -----. ----- ----- ----- ----- ----- ----- ----- ----- ----- -----.

개정 전	개정 후
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 중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부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 ----- ----- ----- ----- ----- ----- ----- ----- ----- ----- 2026 년 12월 31일----- -----

개정 전	개정 후
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u>재산세의 100분의 50</u>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정한다. 1. 2. (생략) ④ 「<u>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u>」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 (생략)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⑧ (생략) <신설>	----- ----- <u>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u>-----. ----- ----- 1. 2. (현행과 같음) ④ <u>벤처기업</u>----- ----- ----- -----. 1. 2. (현행과 같음)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u>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u>」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률 부칙

제6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재산세 경감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종전의 제58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재산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기간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1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외대상 명확화 (§58의3⑥ 등)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창업 제외 유형’ 포괄적 규정 ○ ‘사업을 최초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 * (법 §58의3⑥) 창업 제외 유형 1. 기존사업을 승계하여 개시 2. 개인이 동종사업을 법인으로 전환 3. 폐업 후 동종사업을 재개 4. <u>사업확장·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u>	□ ‘창업 제외 유형’ 시행령으로 명확화 ○ 세부 유형을 구체화(시행령 신설)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 위임 근거 마련 * (영 §29의2) 사업 최초개시로 보기 곤란한 경우 - <u>개인이 추가로 동종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신설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u> - <u>해당법인 및 법인의 과점주주가 동종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신설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u> - <u>법인의 형태변경 후 동종사업 영위하는 경우</u>

□ 개정내용

- 창업에서 제외되는 사유 중 사업확장 및 업종추가와 관련, ‘새로운 사업 최초 개시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 세부 유형을 구체화하여 시행령으로 신설

□ 적용요령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illegible]

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
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 (생략)

③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
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
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신설>

⑦ ~ ⑨ (생략)

-----.

1.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3. (현행과 같음)

4. -----
----- 경우

5. 그 밖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 ⑨ (현행과 같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 ⑪ (생략) <신설>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법 제58조의3제6항제5호에서

개정 전	개정 후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u>1. 개인사업자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는 경우</u> <u>2.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설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해당 법인과 신설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u> <u>3. 법인인 중소기업이 회사의 형태를 변경한 이후에도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u>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학교제외) 부동산 감면 ○ 취득세 75%, 재산세 50% ○ 일몰기한 : '23.12.31.	☐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취득세·재산세 50% * (비수도권 지역) 재산세 60% ○ 일몰기한 : '26.12.31.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학교) 부동산 감면 ○ 취득세 75%,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일몰기한 : '23.12.31.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6.12.31.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중과세 배제 ○ 일몰기한 : '23.12.31.	☐ 일몰 종료

□ 개정내용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감면을 연장하되, 학교가 아닌 사업자에 대하여는 유사제도와 형평성을 위해 감면 재설계*
 * 취득세 75%, 재산세 50% → 취득세·재산세 50%(비수도권 60%)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대부분 임대로 운영되고 있어 지원 실익이 낮은 점 고려하여 감면 종료

□ 적용요령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략)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③ ----- ----- ----- -----.
1.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u>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1. ----- ----- ----- ----- <u>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u> ----- -----.
1의2. 제41조제1항에 따른 학교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1의2. ----- ----- ----- -----

개정 전	개정 후
부동산(학교등이 취득한 부동산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u>재산세</u>(「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을 각각 <u>2023년 12월 31일까지</u> 감면한다. 2. (생략) ④ (생략)	----- ----- ----- ----- ----- <u>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u> <u>이 호에서 같다</u>----- <u>과세기준일 현재 창업보육센터</u> <u>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u> <u>대해서는 재산세</u>---- <u>2026년 1</u> <u>2월 31일</u>-----.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8 재산세 특례체계 정합성 제고 (§60③·§83①)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재산세 특례체계 정합성 결여 ○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사용」에 한 감면이 타당하나, - 일부조문상 해당 요건 부재* *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 경우 재산세는 영구히 자동감면으로 오해 소지	□ 재산세 특례체계 정합성 제고 ○ 「직접사용」하는 당해연도의 재산세에 대하여만 감면이 적용되도록 일부조문 명확화

□ 개정내용

- 재산세 감면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이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감면요건 명확화 및 지방세 특례체계 정합성 제고

□ 적용요령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 운영상 동일하게 적용하던 사안으로 개정 전후의 실체적 내용 변경 無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략)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개정 전	개정 후
른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u>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1의2. 제41조제1항에 따른 학교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학교등이 취득한 부동산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경우의 <u>부동산을 포함한다</u>)에 대해서는 <u>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u>	----- ----- -----. 1. ----- ----- ----- ----- <u>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u> -----. 1의2. ----- ----- ----- ----- ----- ----- <u>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u>----- <u>과세기준일 현재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u>

개정 전	개정 후
100을 각각 <u>2023년 12월 31일까지</u> 감면한다.	<u>는 재산세</u> ----- <u>2026년 12월 31일</u>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u>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다만,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은 건축공사 착공일부터 적용한다.	① ----- ----- ----- ----- ----- ----- ----- ----- ----- <u>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u>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신 설 >	□ 3등급 이상 친환경 선박 취득세 세율경감 특례 신설 ○ 인증등급별 차등 세율특례 <table> <tr> <th>친환경 등급</th><th>취득세 세율특례</th></tr> <tr> <td>1등급</td><td>표준세율 - 2.0%p</td></tr> <tr> <td>2등급</td><td>표준세율 - 1.5%p</td></tr> <tr> <td>3등급</td><td>표준세율 - 1.0%p</td></tr> </table> ○ 일몰기한 : '26.12.31.	친환경 등급	취득세 세율특례	1등급	표준세율 - 2.0%p	2등급	표준세율 - 1.5%p	3등급	표준세율 - 1.0%p
친환경 등급	취득세 세율특례								
1등급	표준세율 - 2.0%p								
2등급	표준세율 - 1.5%p								
3등급	표준세율 - 1.0%p								

□ 개정내용

-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및 탄소중립 정책 지원을 위해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취득세 세율경감 특례 신설*

*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등급별(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로 세율 차감

□ 적용요령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u><신설></u>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이하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선박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1등급인 경우: 1천분의 20 2.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2등급인 경우: 1천분의 15 3.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3등급인 경우: 1천분의 10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 감면 ☐ 추징요건(추징 유예기간) - 2년 ^{이내} 매각·수출하지 않을 경우 ☐ 추징 제외 <추 가>	☐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 감면 ☐ 추징요건(추징 유예기간) - 2년(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3년) ^{이내} 매각·수출하지 않을 경우 ☐ 추징 제외 -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 추징 제외

□ 개정내용

-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추징 유예기간 완화(2→3년)
 -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매각주기가 길어 승용자동차에 비해 2년 이내에 매각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 재난 피해로 폐차·폐기하는 경우 추징 제외 추가
 - 재난 피해는 예측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고,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그 귀책사유를 묻기 어려운 점 등 고려

□ 적용요령

- '24. 1. 1.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22. 1. 1.부터 '23. 12. 31.까지의 기간에 취득하는 경우에도 '24. 1. 1. 이후에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도래한 시점까지 매각·수출하지 않을 경우 추징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68조(매대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	제68조(매대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중고자동차등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② ----- -----2년 <u>(「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3년)-</u> <u>----. ----중고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u> ----- ----- ----- ----- ----- ----- -----. <u>1.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u>
<신 설>	<u>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신 설>	

21 도시첨단물류단지 취득세 특례 신설 (§71의2)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신 설 >	☐ 도시첨단물류단지 內 물류시설용 부동산 감면 ○ (감면대상) 물류시설용 토지 및 건축물 ○ (감면율) - (시행자) 취득세 15%(조례10%) - (입주자) 취득세 40%(조례10%)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내용

- 도시 물류 서비스 개선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세 감면 신설
 - (감면대상) ①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용 토지 및 물류시설용 건축물,
②도시첨단물류단지內 물류사업 직접 사용(물류시설용) 부동산
 - (감면내용) 시행자: 취득세 15%* 경감, 입주기업: 취득세 40%* 경감
- * 조례로 + 10%p 추가 경감 可
- ※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행자(15%)에 대한 감면 적용

□ 적용요령

- '24. 1. 1. 이후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u><신 설></u>	제71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첨단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라 한다) 개발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물류시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개정 전	개정 후
	<u>정당한 사유 없이 물류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u> <u>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u> <u>②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제71조제2항에 따른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제1항에 따른 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u> <u>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u> <u>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u>

개정 전	개정 후
	<u>는 경우</u> <u>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u>

22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감면 사후관리 규정 보완 (§75의4)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반환공여구역 감면 추정 요건 ☐ 유사감면규정(인구감소지역) 등 일반적 추정요건보다 완화	☐ 추정요건 정상화 ☐ 인구감소지역 등 일반적 추정요건과 동일하게 정비

□ 개정내용

- 반환공여구역 감면의 의무사용과 관련된 추정요건을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감면규정 등 일반적 추정요건과 동일하게 보완

- ✓ (인구감소지역) 사후관리 체계에 부합(=일반적 추정규정(§178①)과 동일)
 - ②직접 사용일부터 2년내 ③매각·증여·他용도 사용시 추정
- ✓ (반환공여구역) 의무사용 요건 정합성 훼손
 - ①정당한 사유없이 ②취득일부터 3년내 ③매각·증여시 추정

구분	개정 前		개정 後
① 의무사용 위배	예외 인정	⇒	예외 <u>未</u> 인정
② 의무사용 개시일	취득일		<u>직접 사용일</u>
③ 他용도 사용시	未추정		<u>추정</u>

□ 적용요령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부칙 §2),
- 이 법 시행 전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추정규정 적용(부칙 §12)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illegible]

개정 전	개정 후
② (생 략)	<u>는 경우</u> ② (현행과 같음)

■ 법률 부칙

제12조(반환공여구역 등에서의 창업 등에 따른 감면 취득세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의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함에 따라 감면받은 부동산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7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5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다.

23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 신설 (§79의2)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신 설 >	☐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용부동산 감면 ○ 감면 대상자 - '24.1.1. 이후 지원대상 국내 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감면 요건 - 선정일부터 4년 이내 해외 사업장 청산·양도할 것 - 과밀억제권역 外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증설할 것 - 해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업종을 영위할 것 ○ 감면율 : 취득세 50%* 재산세 75%(5년) * (취득세) 조례로 50%p 추가 可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내용

-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내 복귀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 신설(법 §79의2)

* (취득세) 50% 감면 + 조례로 50% 可, 재산세 75% 감면(5년간)

- (감면대상자) 선정된 국내복귀기업(해외 2년 이상 운영) 중 과밀억제 권역 外로 복귀한 기업
- (감면요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고, 국내에 공장 및 사업장을 신·증설하여 해외사업장에서와 동일 업종 영위 * 축소 제외
- (추징요건) 일반적 추징요건 + 국내복귀기업 이행요건(①+②+③)*
 - * ①4년內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②선정일로부터 5년內 신설·증설 완료,
 - ③취득일로부터 5년간 국내복귀기업 유지

□ 적용요령

- '24. 1. 1. 이후 선정된 국내복귀기업부터 적용(부칙 §7)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79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제3호에 따른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 업종을

개정 전	개정 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1.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할 것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3. 해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전	개정 후
	1. <u>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u> 2. <u>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u> 3. <u>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4년 이내에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u> 4. <u>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u> 5. <u>해당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원대상 국내 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u>

■ 법률 부칙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 기회발전특구 內 사업용 부동산 감면 ○ 비수도권 특구로 본점·주사무소·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수도권 사업장을 양도·청산) - 취득세: 50% + 50%(조례) - 재산세: 5년간 100%, + 5년간 50%(조례) ○ 특구내에서 창업하는 기업 (최초로 사업을 개시) 【비수도권】 ※ 이전 감면율과 동일 - 취득세: 50% + 50%(조례) - 재산세: 5년간 100% + 5년간 50%(조례) 【수도권】 ※ 현행 창업 감면과 동일 - 취득세: 50%+25%(조례) - 재산세: 3년간 100%+2년간 50% ○ 특구내에서 공장 신증설 (기존 사업장 유지, 신증축) 【비수도권】 ※ 현행 산단 감면과 동일 - 취득세: 50% + 25%(조례) - 재산세: 5년간 75% 【수도권】 ※ 현행 산단 감면과 동일 - 취득세: 50%+25%(조례) - 재산세: 5년간 35% ○ 일몰기한 : '26.12.31.

□ 개정내용

- 기회발전특구 제도 지원을 위해 특구로 이전하거나 특구 내 창업,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신설

구분	감면 내용
이전·창업	취득세 50%+50%(조례可), 재산세 100%(5년) + 50%(5년, 조례可) ※ 수도권(창업) : 취득세 50%+25%(조례), 재산세 100%(3년)+50%(2년)
공장 신·증설	취득세 50%+25%(조례可), 재산세 5년간 75%(수도권 35%)

□ 적용요령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 본점·주사무소의 범위 및 공장의 범위, 업종, 규모 및 공장용 부동산의 요건 등 시행규칙 규정 신설 필요, 신설 시 개정내용과 함께 별도 지침 제공 예정

②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서 창업(제58조의3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

개정 전	개정 후
	<u>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u> <u>1.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u> <u>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u> <u>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u>

개정 전	개정 후
	<u>로 사용하는 경우</u> <u>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100분의 50(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u> <u>② 수도권(제75조의5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u>

개정 전	개정 후
	<u>범위 및 공장의 범위, 업종, 규모 및 공장용 부동산의 요건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u> <u>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 의무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u> <u>가.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수도권에서 이전하기 전에 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본점, 주사무소, 공장을 수도권에 다시 설치하는 경우</u> <u>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u>

개정 전	개정 후
	<u>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u> <u>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u> <u>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u> <u>③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공장의 범위, 업종, 요건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u> <u>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u>

개정 전	개정 후
	<u>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 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u> <u>가. 공장을 신·증설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u> <u>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u> <u>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u> <u>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u>

개정 전	개정 후
	<u>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u>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소멸·멸실자동차 자동차세 면제 ○ 동일한 면제내용에 대해 2개 법*에서 중복 규정 中 * (지방세법) 법§126, 영§121①4 (지방세특례제한법) 법§92③	☐ 면제규정 삭제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존치

☐ 개정내용

- 「지방세법」과 중복되는 소멸·멸실 자동차 면제 규정 삭제

☐ 적용요령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② (생략) ③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전국적 지원이 필요한 인적재난의 경우, 지자체 조례등으로 감면 ⇒ <u>통일적이고 신속한 지원에 한계</u> ○ (법정감면) 물적 피해자 限 ※ 인적 피해자는 지자체 조례 등 감면을 통해 지원 중	□ 특별재난 등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는 <u>법정화 등 체계적 규정</u> ⇒ <u>효율성·일관성 제고로 신속한 피해지원 체계 구축</u> ○ (법정감면) + <u>인적 피해자</u>[*] *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경우 限 ※ 또한, 특별재난지역 內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하여는 조례 또는 의회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토록 개정하는 내용 포함

□ 개정내용

-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통일된 지방세 특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內 지방세 감면 신설
-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경우로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방세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구 분	인적 피해
감면요건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경우限 ※ 기타 재난의 경우 조례, 의회의결을 통해 지방세 감면 可
감면내용	▶ (사망자·유족) 사망한 연도의 정기분 지방세[*] 면제 * 재산세(도시지역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포함), 자동차세 소유분, 주민세 ※ 주민세는 개인분 및 사업소분(사업소분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 (유족)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상속으로 취득시 상속분 취득세 면제

- 특별재난지역 內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하여는 조례 또는 의회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토록 규정 신설

☐ 적용요령

- '24. 1. 1. 이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8)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에 대한 감면) ①·② (생략) ③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신 설>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지방세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하여 사
<신 설>	

망한 자(이하 이 항에서 “사망자”라 한다) 또는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하 이 항에서 “유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한다.

1. 사망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방세(사망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로 한정한다)를 면제한다.

가.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사업소분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나.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로 한정한다)

다.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라.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로 한정한다)

2. 유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방세를 면제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사망자

	<u>의 사망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로 한정한다)</u> <u>나. 취득세[당해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등(「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부동산등을 말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u>
--	--

■ 법률 부칙

제8조(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족의 지방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7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중복 특례 명확화 (§180)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제작결함 등에 의한 자동차 교환에 따른 감면 ☐ 종전차량 가액 범위내에서만 감면	☐ 친환경자동차 등으로 교환하는 경우 ☐ 종전 차량가액에 더하여 친환경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도 거듭하여 감면토록 개선

□ 개정내용

- 제작 결함으로 교환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他조문과의 중복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 (예시) 친환경자동차를 제작결함으로 교환하여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

□ 적용요령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 운영상 동일하게 적용하던 사안(지방세특례제도과-676('23.11.14.)으로 개정 전후의 실체적 내용 변경 無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 ----- -----

개정 전	개정 후
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u>제73조</u>, 제74조의2제1항, 제92조 및 제92조의2와 다른 지방세 특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모두 적용하되, <u>제73조</u>, 제74조의2제1항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 -. ----- <u>제66조제1항, 제73조</u>----- ----- ----- ----- ----- <u>제66조제1항, 제73조</u>----- ----- ----- -----.

28 이자상당가산액 이자율 인하 (영§123의2①)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이자상당액 <u>이자율</u> ○ 1일 10만분의 <u>25</u>	☐ <u>이자율 인하</u> ○ 1일 10만분의 <u>22</u> ※ 지방세기본법상 납부가산세의 이자율 등과 일치

☐ 개정 내용

- 이자상당액 이자율을 지방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와 동일하게 1일 10만분의 22로 인하
- 납세편의 및 입법 효율성 등 고려, 금번 개정이후부터는 추가 개정없이도 납부지연가산세와 일치되도록 설계*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

☐ 적용요령

- 2024. 1. 1.부터 시행하되(부칙 §1),
- 이 영 시행 전에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 개정 전까지의 기간은 종전 이자율(10만분의 25)을, 개정 이후의 기간은 개정 이자율(10만분의 22)을 적용(부칙 §3)
- * 이자상당액은 추정사유가 발생하는 날까지 일할 계산되는 측면 고려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제123조의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① 법 제17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감면된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u>1일당 10만분의 25</u> ② (생략)	제123조의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① -- ----- ----- ----- ----- ----- ----- 1. (현행과 같음)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 ② (현행과 같음)

■ 대통령령 부칙

제3조(감면 취득세 추징을 위한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율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는 경우 당초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율은 종전의 제1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르고, 이 영 시행일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율은 제12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Ⅲ. 참 고 자 료

2024년 지방세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

	감면내용	조문	세 목		적용시기
			취	재	
1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	§19	○	○	'15.1.1.
2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21	○	○	
3	한국농어촌공사(경영회생 지원 환매취득)	§13②2	○		'16.1.1.
4	노동조합	§26	○	○	
5	임대주택(40㎡ 이하, 60㎡ 이하)	§31①1,②1,④1	○	○	
6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40㎡ 이하)	§31의3①1	○	○	
7	행복기숙사용 부동산	§42①	○	○	
8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	§44의2	○	○	
9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45①	○	○	
10	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	§52①	○	○	
11	한국자산관리공사 구조조정을 위한 취득	§57의3②	○		
12	경차	§67②	○		
13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 주택 (85㎡ 이하)	§81③2	○		
14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	§83①	○		'17.1.1.
1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갯생보호시설	§85①	○	○	
16	내진설계건축물(대수선)(‘21년까지 적용)	§47의4①2	○	○	
17	국제선박	§64①,②,③	○		
18	매매용 중고자동차	§68①	○		
19	수출용 중고자동차	§68③	○		'18.1.1.
20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21년까지 적용)	§13②1의2호		○	
21	농협·수협·산립조합의 고유업무부동산	§14③	○	○	
22	기초과학연구원, 과학기술연구기관	§45의2	○	○	
23	신협·새마을금고 신용사업 부동산 등	§87①,②	○	○	
24	지역아동센터	§19의2	○	○	
25	창업중소기업(창업후 3년내) 재산세	§58의3		○	'19.1.1.
26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22의2	○		
27	학생실험실습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등	§42②	○	○	

	감면내용	조문	세목		적용시기
			취	재	
28	문화유산·자연환경 국민신탁법인	§53	○	○	
29	공공기관 상법상회사 조직변경	§57의2③7	○		
30	부실금융기관 등 간주취득세	§57의2⑤	○		
31	학교등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	§60③1의2호		○	
32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 주택(85㎡↓)	§74④3	○		
33	법인의 지방이전	§79①	○	○	
34	공장의 지방이전	§80①	○	○	
35	시장정비사업(입주상인)	§83②	○		
36	평택이주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81의2	○		
37	사회복지법인	§22①,②	○	○	'20.1.1.
38	별정우체국	§72②		○	
39	지방공단	§85의2②	○	○	
40	새마을운동조직	§88①	○	○	
41	정당	§89	○	○	
42	마을회	§90	○	○	
43	수소·전기버스	§70④	○		
44	장학단체 고유업무 부동산	§45②1	○	○	
45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조특법 적용대상은 제외)	§78의3	○	○	'20.7.10.
46	생애 최초 주택	§36의3①1	○		
47	전공대학 ('23년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 배제)	§44②	○	○	'21.1.1.~ '22.12.31.
48	농협 등 조합간 합병	§57의2②	○		'21.1.1.
49	농협·수협조합의 부실조합 재산 양수 등	§57의3①	○		'22.1.1.
50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그 자산을 재취득	§57의3④	○		
51	한국자유총연맹	§88②	○	○	
52	반환공여구역내 창업용 부동산	§75의4	○		'23.1.1.
53	인구감소지역내 창업용 부동산	§75의5	○	○	
54	지방농수산물공사	§15②	○	○	'26.1.1.
55	도시철도공사	§63⑤	○	○	